

교상건립추진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08
제정일자	1988.03.08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1988.03.08.제정 2019.07.16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부산경상대학교 교상건립추진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칭함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건학 이념과 학훈에 입각하여 전 잔메인 모두의 기상을 대신할 수 있는 잔메인의 교상을 건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건립추진위원회)

- 1. 본 위원회는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위원의 추천을 받아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.
- 2. 본 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들의 제청에 의해 선출한다.
- 3. 감사는 당연직 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4. 당연직 위원은 총장, 처·실장으로 한다.<신설 2019.07.16.>
- 5. 위원회는 7인이내의 당연직 위원 또는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.<신설 2019.07.16.>

제4조(기능)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- 1. 교상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 편성
- 2. 교상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의 시행
- 3. 교상 건립에 따른 예산 운영
- 4. 교상 건립에 따른 기금 확보 사업
- 5. 교상 건립에 따른 필요한 사항

제5조(회의)

- 1.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당연직 위원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2. 위원회의 의결은 당연직 위원들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

제6조(기금)

- 1. 본 위원회의 기금은 본 대학 교직원, 졸업생, 재학생들의 모금으로 한다.
- 2. 본 위원회의 최초 기금은 아래와 같다.
 - 87학년도 제7최 졸업생 학교기증 선물대(₩2,000,000)
 - 학교 기탁금(₩2,000,000)
- 3. 기금은 교상 건립에 따른 내용 이외의 일체 지출할 수 없다.

제7조(결산 및 감사)

1. 결산 및 감사는 교상 건립중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.



교상건립추진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08
제정일자	1988.03.08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2

2. 결산 및 감사 내용은 교상 건립 후 익월 학보에 이를 게재한다.

제8조(규정보완) 본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198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『교학처』를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